

추가약정서

(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고지의무 관련 추가약정용)

유니온저축은행 앞

20 년 월 일

채 무 자 : _____ (인)
주 소 : _____

채무자는 유니온저축은행(이하 “저축은행”이라 합니다.)과 약정한 20 년 월 일자 여신거래약정서(가계용)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.

제 1조 (목적) 이 약정서는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의 취급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속한 세대^{주1)}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(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)을 정확히 확인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대출거래를 하기 위한 약정입니다.

주1) “세대”라 함은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구성되며, 세대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(「출입국관리법」에 따른 외국인 및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포함)상에 배우자,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,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,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.

제 2조 (기 보유 주택)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(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)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종류	소유자	주소

제 3조 (기한전의 채무변제 의무)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이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제 2조에 명시되지 않은 주택(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) 등을 보유^{주2)}하고 있는 경우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7조 제 4항 제 2호에 의하여 본 대출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하게 되고, 그에 따라 본 대출을 즉시 변제할 의무를 집니다.

주2) 다만 대출신청일 이후 상속에 의한 취득은 제외